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5.4.22. 시행)를 계기로 하위법령 내 관련 조문을 개정(삭제)하는 한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계와 보조항로 운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을 보조항로 사업자로 선정 시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조항로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의 예외 조건 추가(안 제10조 제1항)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 시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위임(안 제12조의4 제2항 신설)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두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

다.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납부 관련 조항 삭제
(안 제12조의5 삭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25.4.22.)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경우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등을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제12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

·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u>수의계약</u> 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 ----- ----- ----- ----- ----- ----- <u>경우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등을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생략)	제12조의4(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12조의5(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2조의 3제1항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u> ”이란	<u><삭 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연 락 처	(044) 200 - 5738